

2019년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 준 정 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1 [02020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6세 이하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2. 부모협조 하에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검사의뢰를 통하여 실시한 발달검사(KDEP, DDST,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신청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검사의뢰서 및 검사결과 첨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제공받는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 건강검진결과 발달지연 영유아 2. 병원 건강검진결과 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 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한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조부모, 장애부모, 한부모, 다문화가구,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 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5%;">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91 277 1394 613"> <thead> <tr> <th data-bbox="391 277 1259 31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59 277 1394 318">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1 318 1259 539">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259 318 1394 539">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91 539 1259 580"> 2. 부모상담 및 교육 </td> <td data-bbox="1259 539 1394 580"> 월1회 </td> </tr> <tr> <td data-bbox="391 580 1259 613">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td> <td data-bbox="1259 580 1394 613"> 월1회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 대상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4단계 :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 (사후검사 실시)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5)</p>								
<p>⑦ 서비스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안전관리기준 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p>○ 추가 확보시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민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p>○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 3개월 : 480시간,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p>○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p> <p>○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p>								

2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인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1. 기본서비스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p>① 언어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p>② 놀이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p>③ 미술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p>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차</p>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 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①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2. 부가서비스 (선택)

-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 ② 부모교육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필요시 및 수시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

	<p>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p>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를 거쳐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5년 : 9,600시간, 7년 : 13,44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기관장(수퍼바이저) 지정기준 :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수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진단서, 부모보고검사결과지, 소견서요약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단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1년 이내 가능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홈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1:1~1:12) ※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⑦ 설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집단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 1,92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4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손가구의 아동 2. 장애부모(지적, 언어, 청각, 시각, 지체 등의 순)의 아동 3. 한부모 가구의 아동 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아동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상담사, 초등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3.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전공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5.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1등급</th> <th style="width: 20%;">2등급</th> <th style="width: 20%;">3등급</th> <th style="width: 20%;">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d>10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d>72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이용자 욕구 상담·조사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탐방, 울산 기관·기업 연계프로그램 연1회 이상 실시 3. 3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 4.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및 사회성척도검사) 의무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배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 1,92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5 [190108] 실버 맞춤형 문화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조손가구의 노인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0%;">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90천원</td> <td>8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0천원</td> <td>2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상시 </td> </tr> </tbody> </table> <p>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p> <p>※ 단순 운동 및 손유희, 스트레칭, 노래 등 서비스 제공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여가 지원서비스와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를 혼용해서 선택 (주2회, 회당 60분) 3.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 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 4. 4단계 : 서비스 이용자 생활만족도 검사 및 사후관리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이용자 생활만족도 검사) 의무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상시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1:1~1:20)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실버맞춤문화활동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6 [190208] 실버 심리지원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노년의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해소와 정서안정 지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회성 강화로 노후의 생활건강을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 Beck우울증검사, 정신신경증상척도), 자살생각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지 제출) 3. 노인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고립 등에 따른 긴급심리지원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2.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p>※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p>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심리치유, 인지향상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행동치료학 등 인간발달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노인 심리지원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 ②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36천원</td> <td>12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24천원</td> <td>32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 (만65세 이상 위험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24천원	3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24천원	32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9 315 1460 1176"> <thead> <tr> <th data-bbox="359 315 1241 376">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315 1460 376">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9 376 1241 566">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0이내) </td> <td data-bbox="1241 376 1460 566"> 월1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59 566 1241 1176">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td> <td data-bbox="1241 566 1460 1176"> 월3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초기 상태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 진단·분석 ▶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심리치유, 정서안정, 인지향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회참여서비스 실시 ※ 심리상담·치유, 인지향상, 사회참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가능(회당 60분) 3.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자살생각척도, 노인생활만족도 중 2개 이상 실시) 의무 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0이내)	월1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 1:30이내)	월1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 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 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p>⑥ 집단규모</p>	<p>○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치유서비스, 인지향상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p> <p>○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실버생활건강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 480시간,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8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우선순위 : 1. 지체1·2급 및 뇌병변 1, 2, 3급 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사소견서)																
③ 제공인력	1.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자 2.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3.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군”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 (120천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td> <td>중위소득 140% 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648천원</td> <td>576천원</td> <td>504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72천원</td> <td>144천원</td> <td>216천원</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재판정 4회(단, 대기자 수 및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구·군이 자율 결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td> <td rowspan="3">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td> </tr> <tr> <td>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td> </tr> <tr> <td>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재가방문형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9 [280108] 건강증진 맞춤형 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20세 이상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3개월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중 제출) 3. 만65세 이상 노인 4. 만20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4. 임부(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 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임부(임신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r> </tbody> </table> 2.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 14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4등급</th> <th style="width: 25%;">5등급</th> <th style="width: 35%;">6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26천원</td> <td>112천원</td> <td>9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4천원</td> <td>28천원</td> <td>42천원</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항목	내 용
----	-----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형 지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u>*1일 1회 서비스 원칙</u>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u>*1일 1회 서비스 원칙</u>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u>*1일 1회 서비스 원칙</u>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u>*1일 1회 서비스 원칙</u>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u>*1일 1회 서비스 원칙</u>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서비스 등록, 상담, 욕구 판정 2.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사전검사 실시),인바디 ※ 혈액검사 필수사항 :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빈혈검사 ※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 3.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 5단계 : 기초체력 검사 및 사후관리 (사후검사 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체력변화측정척도 검사) 의무실시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1:1~1:8) ※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운동지도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 1,920시간, 3년 : 5,76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10 [210108] 직업능력발달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 1. 경력단절 및 구직활동 중인 자 2. 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 일반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장애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학사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기존제공기관의 유예기간은 1년임.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1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2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td> <td rowspan="3">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td> </tr> <tr> <td>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td> </tr> <tr> <td>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td> <td>상시</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개인육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 2단계 : 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장애인 경우 : 90분(1:1인 서비스), 120분(1:2~1:5인 서비스) ▷ 비장애인 경우 : 120분 3. 3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4.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만족도, 자격증 취득 현황 조사)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실시 및 자격증 취득 현황 구·군 보고</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요리 프로그램 진행 시, 대표 및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개시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필수 실시(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직업능력개발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 960시간, 2년 : 3,84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11 [170108] 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부모, 예비부모, 조부모,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성인 ○ 우선순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진단서 2.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소견서 3.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4.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시 접수증명서 제출) 5.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의 상담이나 교육관련 전임강사 또는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이나 교육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학사학위 이상자로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이상자로 부모교육자격증,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기존제공기관의 유예기간은 1년임.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4회(주1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td> </tr> <tr> <td> 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td> </tr> <tr> <td> 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td> </tr> <tr> <td>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초기 상담 (서비스욕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욕구 조사,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 유형검사 3. 3단계 : 전문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필수 서비스 : 월3회, 선택 서비스 월1회) 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5.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부모자녀관계척도) 의무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월4회(주1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월4회(주1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8인 이내 (1:1~1:8)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부모학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12 [170308] 임신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3개월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2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부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대상 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신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 체형교정 및 관리 관련 종목)자격기본법에 의한 체형교정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서비스 신청 후 10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지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모학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신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건강증진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신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지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모학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신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건강증진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신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1일 1회 서비스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지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모학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신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건강증진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신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지원서비스 월2회 이상 필수 ②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3회 ③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관련 단체 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문단체·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 3.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성인대상 심리상담 및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 480시간,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3년 : 5,76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13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가 및 정서안정을 위한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50세 이상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 2. 만50세 미만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 <p>※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p>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 도시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 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생활영농서비스 종사자로 경력 2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32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48천원</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4등급</th> <th style="width: 45%;">5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td> <td>중위소득160%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08천원</td> <td>9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72천원</td> <td>9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대상자	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	중위소득160%초과~	정부지원금	108천원	90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9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대상자	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	중위소득160%초과~																											
정부지원금	108천원	90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9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td> </tr> <tr> <td>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p>4. 생활영농 심화 체험</p> <p>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p> <p>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p> <p>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p>	<p>월1회(주1회) (회당 90분)</p>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절차</p> <p>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p> <p>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p> <p>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및 재유구 조사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p>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영농기술인지도, 생활만족도</p>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p> <p>○ 안전관리기준 준수</p> <p>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p> <p>2. 기관방문형</p> <p>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p> <p>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p> <p>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p> <p>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p> <p>3. 집단활동형</p> <p>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p> <p>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p> <p>③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p> <p>④ 차량으로 이동 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p> <p>※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p> <p>○ 추가 확보시설 조건</p> <p>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p> <p>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p> <p>※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p> <p>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p> <p>※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p> <p>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p> <p>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 16 호) 활용</p> <p>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p> <p>○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p> <p>○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p>	

14 [990308]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63세 이하 ※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 2.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 기업체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 4.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전문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 <td>중위소득 140% 초과 ~ 15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d>8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최대 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 15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 150% 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주1회/월4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천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족상담 진행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필요 시 (회당 60분)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신청 된 대상자 욕구 조사 (종료 시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종료 시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사전·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HTP, KFD, SCT, BDI, STAl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60분)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명 (1:1) 단, 가족상담 진행 시에는 이용자 가족까지 대상 인원으로 함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성인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7.01.01.~2017.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2019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1 기준중위소득 1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2 기준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	442,043	483,381	487,738

3 기준중위소득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61,000	82,923	54,701	83,802
2인	4,360,000	142,729	142,335	144,749
3인	5,640,000	183,286	191,312	186,282
4인	6,920,000	226,441	245,305	231,041
5인	8,201,000	272,807	297,628	283,533
6인	9,481,000	310,158	336,809	326,151
7인	10,761,000	348,036	380,294	378,988
8인	12,041,000	410,509	449,143	442,043
9인	13,322,000	442,043	483,381	487,738
10인	14,602,000	487,738	531,741	563,593

4 기준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31,000	88,559	65,115	89,539
2인	4,650,000	150,844	151,910	152,850
3인	6,016,000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000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000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000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000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000	442,043	483,381	487,738
9인	14,210,000	487,738	531,741	563,593
10인	15,575,000	563,593	605,597	719,019

